쿠웨이트商標制度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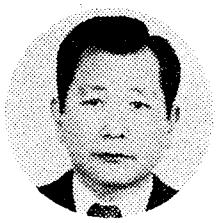

金 景 鎭
<辨 理 士>

이나라의 商標法은 1961年부터 施行하는 不正競爭, 商標 및 商品表示에 관한 法律과 역시 같은해에 公布, 施行하는 商標法施行規則에 의해 運用되고 있다.

商標 및 商標의 登錄節次에 관한 規定에서 보면 商標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敍述하고 있다. 즉, 商標라 함은 顯著한 形狀을 가진 言語, 署名, 文字, 數字, 圖形, 烙印, 標題, 印章, 繪畵, 彫刻 또는 그밖의 標識나 이들의 結合에 의해 構成되어 商品 혹은 產品을 識別할 目的으로 使用되는 것이라고……

1 登錄出願

生產, 製造, 工作과 관련해서 創出되는 商品으로서 去來를 目的으로 하는 物品을 識別하는데 使用하려는 商標를 누구든지 登錄을 出願할 수 있다.

따라서 商標를 登錄한 사람은 그 商標의 絶對的 所有者로 看做되며 登錄日로부터 5年間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계속해서 當該 商標를 使用하고 또한 그 商標의 登錄에 瑕疵가 없는 때에는 그 商標의 所有權은 正當한 것으로 認定된다. 물론 등록출원은 등록에 관한 施行規則에 따라 商標登錄局에 提出한다.

不登錄事由도 規定하고 있음은 모든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 그 事由 가운데는 顯著性이 없는 標識, 商品이나 產品의 慣用圖形 또는 通常의 繪畵, 그리고 公序良俗을 害치는 表現, 圖形 또는 標識 등을 비롯하여 國家나 國際聯合 또는 이들의 機構 및 쿠웨이트와 互惠條約을 맺은 國家의 公共標章, 旗, 그밖의 徽章이나 이들을 模倣한 것등 9가지의 不登錄事由를 規定하고 있다.

한편 여러사람이 同類의 商品에 대하여 同一商標나 또는 거의 同一에 가까운 상표의 등록을 出願하였을 경우에는 登錄官은 이들 出願人 모두의 合意에 의해 어느 1人에게 權利가 歸屬 된다는 要旨의 讓渡證이 提出되거나 또는 그 權利가 確定判決에 의해 決定될 때까지 모든 出願에 대하여 決定을 保留하게된다.

2 登錄商標의 變更 및 存續期間

商標登錄權者는 언제든지 商標의 實體에 대해서 付加하거나 變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관에게 그 許可申請을 낼수 있으며 따라서 등록관은 原登錄에 適用된 規定에 따라 許可申請에 대한 決定을 내려야 한다.

存續期間은 登錄과 同時에 10年의 保護期間을 賦與받으며 商標에 대해서 正當한 權利가 있는 사람은 保護期間의 最終 1年 사이에 商標法 第73條의 規定에 따라서 更新申請을 함으로써 保護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한편 등록관은 保護期間 滿了後 1個月 이내에 書面으로 商標原簿에 記載되어 있는 住所에 의거해서 期間滿了通知를 所有權者에게 하게된다. 따라서 商標所有者가 保護期間 滿了後 3個月 이내에 更新申請을 하지 않은 때에는 登錄官은 職權으로써 商標原簿에서 當該商標를 抹消시킨다.

이밖에 이나라에도 異議申請制度가 있어 누구든지 마지막 公告日로부터 30日 이내에 書面으로 登錄官에게 當該商標의 登錄이 不當하다는 事由를 들어 異議申請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등록관은 出願商標가 登錄을 받을 것인가가 認定되면 등록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3回에 걸쳐 公報에 公告하며 만일 異議申請이 提起되면 등록관은 異議申請書副本을 登錄出願人에게 送付하고 出願人은 副本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登錄官에게 答辯書를 提出하지 않으면 그 出願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되어 버린다. 상표가 온당한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不使用에 의한 登錄取消規定이 있으므로 이를 留念하여야 한다.

만일 商標의 所有者가 그 상표의 不使用에 대한 正當한 理由를 立證하지 못할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訴請에 따라 當該商標가 계속해서 5年間 有效하게 使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確認함과 同時에 그 상표의 등록을 取消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商標의 등록이 取消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를 第3者가 같은 商品에 대하여 登錄하려면 取消日로부터 3年이 經過하여야 한다.

3 商標의 讓渡 및 罰則

어느 나라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상표의 讓渡는 商品을 識別하기 위해 그 商標를 使用하고 있는 營業이나 企業과 함께라야 可能하며 別途의 約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營業 또는 企業의 양도는 양도인의 名義로서 등록되어 있는 密接한 關係를 갖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만일 別途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營業이나 企業이 商標를 除하고서 讓渡되는 때에는 양도인은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商品의 製造 또는 取扱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商標의 讓渡나 質權의 設定은 商標原簿에 登錄되지 않으면 第3者에 對抗할 수가 없다.

이나라의 商標法上의 罰則規定은 商標權의 侵害, 不正表示, 押留등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權利侵害나 不正表示의 경우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3루피 이하의 罰金 또는 이를 併科한다.

1. 大衆을 欺瞞할 目的으로 法律에 의해 등록된 상표를 僞造하거나 摸倣하여 使用한 者
2. 惡意로 自己의 商品에 他人의 所有와 관계되는 商標를 使用한 者
3. 事實을 알면서 僞造, 摸倣 또는 法律에 反한 商標를 使用한 商品을 販賣하거나 販賣 또는 配布토록 提供하거나 販賣할 意思를 갖고 所持한 者
4. 惡意로 商標法 第94條 내지 第98條의 商品表示에 관한 規定을 違反한 者

한편 商標의 所有者는 언제든지 民事 또는 刑事訴訟을 提起하기 전에 民事 또는 刑事訴訟의 審理를 管轄하는 法院에 主務官廳이 發行한 商標登錄證明書를 提出하고 필요한 豫防措置 특히 犯罪行爲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器具나 工具 즉 犯罪行爲와 관계되는 商標가 사용된 商品, 產品, 商號, 包裝材料, 文書 기타 物件의 押留를 請求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의한 押留는 押留가 執行된 날로부터 8日 이내에 押留를 받은 者에 대하여 民事 또는 刑事訴訟이 提起되지 않을 때에는 無效가 된다.

4 施行規則의 要件들

財政經濟部의 商標局이 쿠웨이트에 出願되는 國內外人들의 商標登錄出願을 受理하며 상표등록출원은 반드시 規定된 書式에 따라 當事者나 또는 委任받은 代理人이 提出하여야 하는데 1出願은 1商標의 登錄을 原則으로 한다.

願書에는 다음에 列擧하는 事項들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出願人의 姓名, 職業, 商號가 있을 경우에는 商號, 出願人이 會社일 경우에는 그 會社名, 種類, 本社 및 目的
2) 出願人의 國籍 및 住所
3) 登錄出願에 관계되는 商標
4) 出願商標의 產品 또는 商品의 記述
5) 商品 또는 產品을 識別하기 위해 商標를 使用하고 있거나 使用하려는 商店 또는 企業의 所在地
6) 代理人이 出願하는 경우는 그의 姓名, 住所

7) 登錄에 관계되는 모든 通信 또는 書類를 送達하기 위해 出願人이 쿠웨이트王國內에 指定한 住所

8)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이나 拇印, 出願人이 會社 또는 團體인 경우는 定款에 의해 署名할 權限을 賦與받은 者가 一切의 書類에 署名하여야 한다.

願書에는 出願商標의 見本 1通을 規定된 餘白에 添附하여야 하며 상표견본이 餘白보다 큰 경우에는 透明한 台紙를 사용해서 그 1部를 規定餘白에 붙여 나머지 部分은 접어야 한다.

商標見本으로는 色이 바래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며 商標의 어느 部分이든 細密하고 正確하게 그려야 한다.

聯合商標制度는 同一人에 의해 소유되어서 同一 또는 類似한 類別에 屬하는 상품이나 產品에 使用되는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말한다.

앞서 말한 商標 또는 그 顯著한 部分에 대하여 別途의 登錄出願이 있는 경우에라도 이것을 聯合商標로 보는 것이다.

이밖에 願書의 添付書類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願書에 添付된 商標見本과 同一한 商標見本 3部

2) 出願의 性質에 따라 出願人 및 그 能力 또는 그 商標의 優先權을 確認하는데 主務官廳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書類 및 事項

出願商標에 外國語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아랍文字로 發音을 表記하고 飜譯을 提出하여야 한다.

出願接受證에는 出願番號, 出願人姓名, 出願年月日 그리고 出願內容 및 添付書類등이 記載되어 出願人에게 交付된다.

앞에서도 說明한 바 있지만 第79條에 規定된 公告는 다음에 列擧하는 事項은 포함하여 公告된다.

1) 登錄出願人의 姓名, 國籍 및 職業

2) 出願商標의 正確한 見本

3) 商標登錄에 관계되는 商品 또는 產品

4) 商品 또는 產品을 識別하기 위해 그 商標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하려는 商店 또는 會社의 所在地 異議申請은 公告日로부터 30日 이내에 所定의 方式에 따라 書面으로써 登錄官에게 提出하는데 등록관은 異議申請書寫本을 出願人이나 代理人에게 登記郵送하며 出願人은 寫本을 받은 날로 부터 30이내에 答辯書와 그 寫本을 역시 등록관에게 提出하게 된다. 또한 등록관은 答辯書를 받은 날로부터 2週이내에 등기우편으로 그 寫本을 異議申請人에게 送付하게 된다.

이밖에 商標權의 讓渡라든가 讓渡에 대한 異議申請制度도 마련되어 있다. 讓渡登錄申請의 경우 讓受人이나 그 代理人은 所定의 方式에 따라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 등록관에게 申請한다.

1) 商標의 順番

2) 申請人 및 讓渡人의 姓名, 商號, 種類 및 目的

3) 申請人의 住所

4) 商標登錄에 관계되는 商品 또는 產品

5) 商品을 識別하기 위해 그 상표를 使用하고 있는 商店 또는 會社의 所在地

6) 所有權讓渡年月日

7) 讓渡된 法的根據

8) 代理人이 申請한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

9) 當該商標에 관한 一切의 通信 및 書類를 送達할 쿠웨이트王國內의 申請人의 住所

따라서 商標權의 讓渡申請을 받은 登錄官은 이를 官報에 揭載하고 이에 대한 異議申請도 接受하게된다. 만일 異議申請이 없을 경우에는 規定된 原簿에 商標의 讓渡, 새로운 所有者의 姓名, 職業 및 住所, 所有權移轉理由및 年月日 그리고 登錄年月日 등을 記載하게 된다.

이밖에 商標의 修正, 變更申請도 가능하다. 그 節次는 登錄出願時와 같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修正商標의 見本 3部를 添付하여야 한다. 또한 登錄事項의 變更申請時에는 所定의 方式에 따라 申請書를 作成, 商標의 順番, 소유자의 姓名, 그리고 變更 또는 修正事項을 記載한다.

특히 外國人의 경우 在外者의 代理人規定이 있어 商標의 登錄, 移轉登錄, 附加 또는 修正申請者가 쿠웨이트에 住所를 두지 않은 때에는 쿠웨이트에 住所를 가진 代理人을 選定하여 그에게 所定의 절차를 委任하여야 한다.